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225호

「주택법」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6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투기과열지구 지정

1. 대상지역 : 서울 성동구, 마포구, 강동구, 영등포구, 양천구, 동작구, 광진구, 중구, 종로구, 서대문구, 강서구, 노원구, 성북구, 구로구, 동대문구, 관악구, 은평구, 중랑구, 금천구, 강북구, 도봉구 및  
경기도 수원장안, 수원팔달, 수원영통, 성남수정, 성남중원, 성남분당, 안양동안, 과천, 용인수지, 광명, 하남, 의왕
2. 지정기간 : 2025. 10. 16. ~ 지정 해제시까지
3. 지정효력
  - 「주택법」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
  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9조에 따른 주택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
  -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

4. 효력발생시기 :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※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

시·도	현 행	조 정('25.10.16.)
서울	강남구, 서초구, 송파구, 용산구	좌동
	<신규 지정>	성동구, 마포구, 강동구, 영등포구, 양천구, 동작구, 광진구, 중구, 종로구, 서대문구, 강서구, 노원구, 성북구, 구로구, 동대문구, 관악구, 은평구, 중랑구, 금천구, 강북구, 도봉구
경기	<신규 지정>	수원장안, 수원팔달, 수원영통, 성남수정, 성남중원, 성남분당, 안양동안, 과천, 용인수지, 광명, 하남, 의왕